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예산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R&D 예타 폐지 (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 개정, 제38조의3 삭제)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및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제출 상세 내역 위임 규정(「국가재정법」 제34조제15호 개정)에 따른 시행령 정비

3. 주요내용

가. “R&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(안 제13조의3, 제13조의4 삭제)”

- 1) “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 개정,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&D 예타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”

나. “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(안 제13조의5 신설)”

- 1) “「국가재정법」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,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.”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5(예산안 첨부서류의 범위) 법 제34조제15호에서 말하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명
2. 소관부처
3.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
4. 총사업비
5. 사업기간
6. 세출예산금액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13조의3(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)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1.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</u> <u>2.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</u> <u>3.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</u> <u>4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</u> <u>5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</u> <u>6.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</u> <u>7.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</u> <u>8.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예비</u>	<u><삭 제></u>

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

9.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의 공개

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4(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(이하 “연구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

<삭 제>

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.

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3조의5(예산안 첨부서류의 범위) 법 제34조제15호에서 말하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명
2. 소관부처
3.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
4. 총사업비
5. 사업기간
6. 세출예산금액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	
연 락 처	(044) 214 - 3315